

제 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창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2 -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안자 : 거창군수

1.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1. 제안이유

- 201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군민의 욕구에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 중 이전신축대상 부지 확정으로 변경.

2. 변경재산의 표시

○ 당 초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소 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9,074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82-2	답	1,615	89,148	2012	보건소 이전신축	최영석
	토지	거창읍	송정리	82-3	답	4,745	261,924	2012	“	이진형
	토지	거창읍	송정리	82-4	답	1,724	95,164	2012	“	이진형
	토지	거창읍	송정리	82-5	답	400	22,080	2012	“	최준학
	토지	거창읍	송정리	82-6	답	590	32,568	2012	“	최준학

○ 변 경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9,991	636,406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332-2	과수원	466	230,000	2012	보건소 이전신축	국(재무부)
	토지	거창읍	송정리 332-3	대	3,306	57,000	2012	보건소 이전신축	거창군
	토지	거창읍	송정리 332-4	대	1,322	32,400	2012	보건소 이전신축	거창군
	토지	거창읍	송정리 81	답	291	8,060	2012	“	거창군
	토지	거창읍	송정리 80	대	950	91,105	2012	“	아림재단
	토지	거창읍	송정리 125	답	295	8,850	2012	“	백형용
	토지	거창읍	송정리 333-2	잡	2,776	191,266	2012	“	최규수
	토지	거창읍	송정리 332-7	과수원	585	17,725	2012	“	백은경

《거창군보건소 이전신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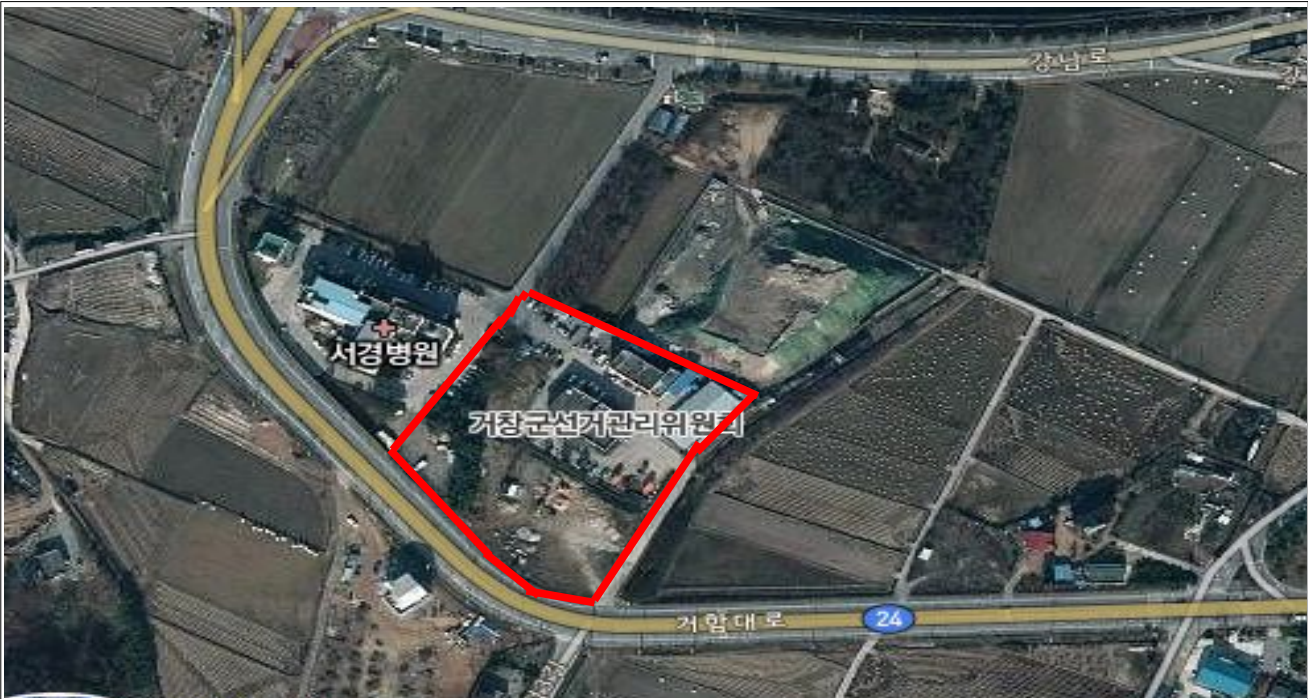
- ① 위 치 : 거창군 송정리 332-3번지 외 7필지
- ② 사 업 량 : 부지 9,991㎡, 건축연면적 2,200㎡
- ③ 사 업 비 : 8,264백만원, 준 공 : 2013년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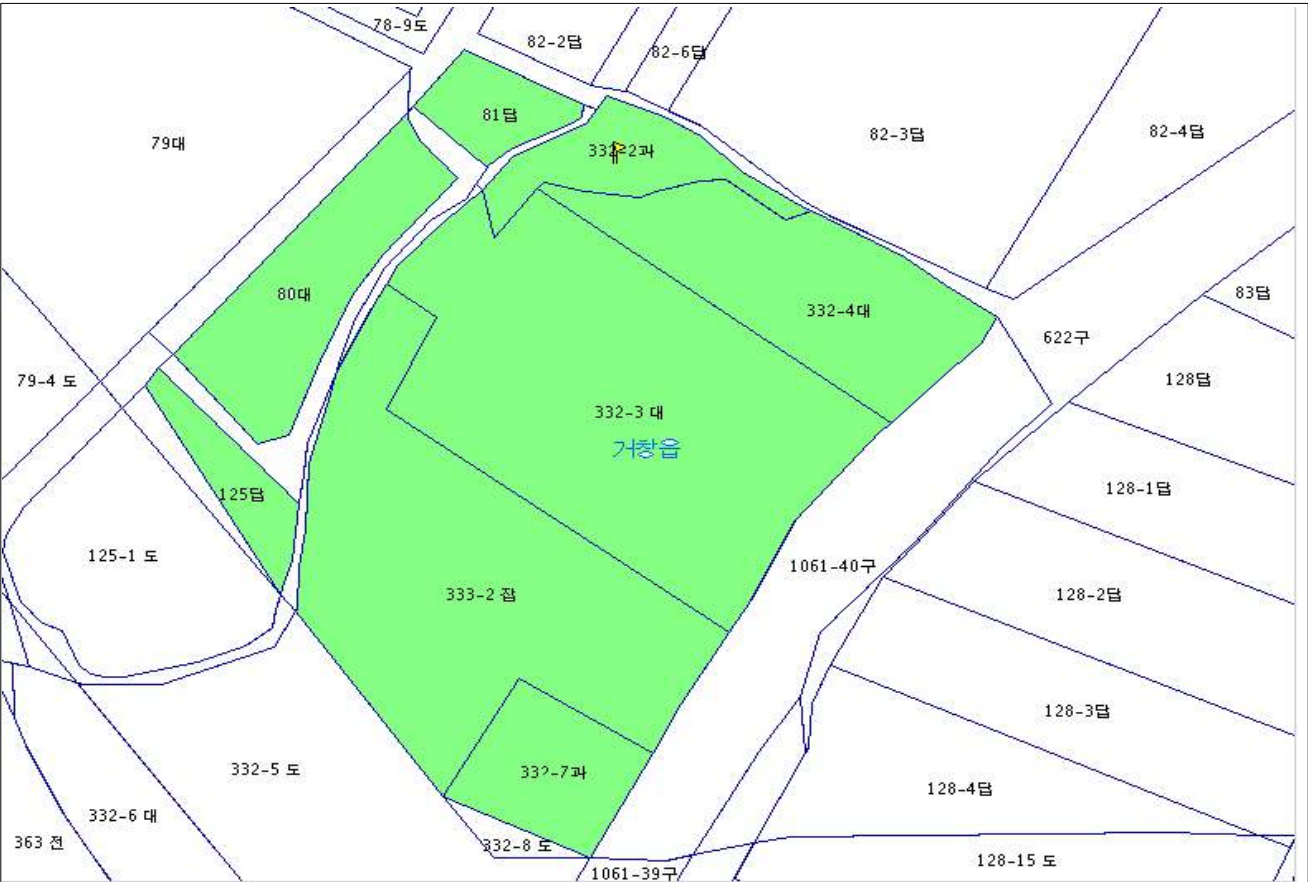
4. 배치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 지적도 및 전경사진



사진설명

부지 사진



사진설명

이전 신축 부지도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2 -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안 자 : 거창군수

② 남하면 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면사무소 내 주차장(7면)이 절대적 부족하여 사무소 접지에 주차장 부지매입 심의를 받았으나, 면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남하보건지소 신축이전('13.11월경)으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면 소재지 주변의 국도상(24호선)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입 부지를 변경

《남하면 민원주차장 조성》

- 사 업 비 : 2억원('12년 기획감사실 상사업비) →확보됨
- 사업내용
 - ①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 보건지소철거, 옹벽보강, 시설설치
 - 주차면 : 22대정도
 - ② 면소재지 주차장 조성
 - 위치 : 남하면 무릉리 1142
 - 부지매입 및 주차장 등 조성

2. 변경재산의 표시

○ 당 초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		3필지		754	21,866			
	토지	거창읍 무릉리 988	답	253	7,337	2012	민원 주차장 부지 확보	정수대
	"	" " 990	전	206	5,974	"		정익환
	"	" " 991	답	295	8,555	"		정익환

○ 변 경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1필지		1,159	57,486			
취득	토지	남하면 무릉리 1142	답	1,159	57,486	2012	주차장 부지 확보	정규성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42번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3 -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안자 : 거창군수

① 탐선 산촌생태마을조성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폐) 고제초등학교 소사분교를 매입하여 산촌지역 방문자 센터 건립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과 산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 하고자 함.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60,822			
취득	토지	소 계		14,113	17,005	2013	탐선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경상 남도 (교육감)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027-1	학교	2,873	8,907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027-3	도로	853	870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028-1	전	699	3,866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213-9	임야	9,688	3,362			
	건물	소 계		376.3	43,817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027-1 (교육연구시설)		376.3	43,817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성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위성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027-1번지외 3필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3 -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안자 : 거창군수

② 거창 경관테마랜드(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친환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내 사유지 매입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5,468.7	464,493		
취득	토지					2013	거창 경관테마 랜드(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따로			붙임”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성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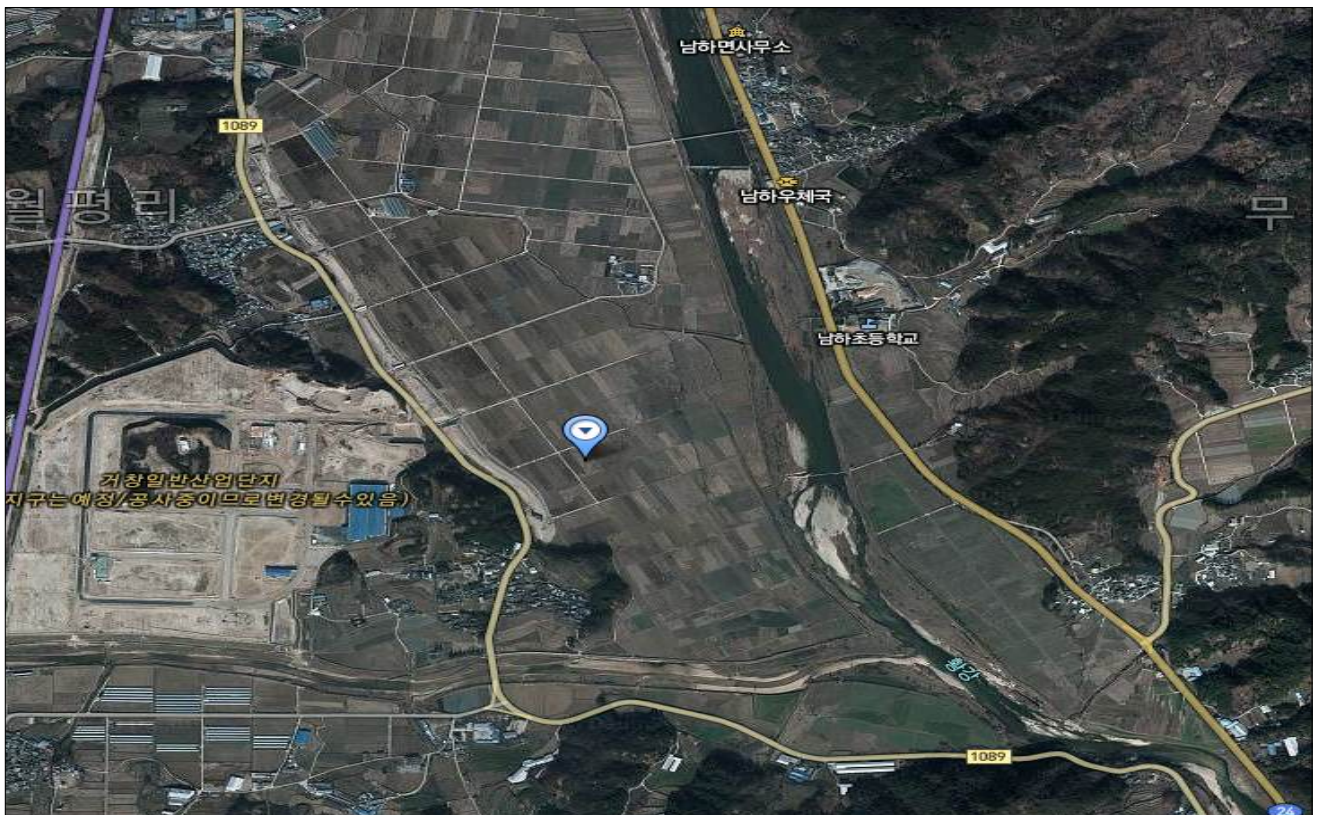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5,468.7	464,493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80	답	1,036.2	13,471	2013	거창경관 테마랜드 (대산지구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	김동률
		남상면 월평리 2281	답	1,241.0	16,133			정종석
		남상면 월평리 2282	답	1,134.1	14,744			정순구
		남상면 월평리 2283	답	1,346.2	17,501			정순구
		남상면 월평리 2284	답	157.4	2,047			정은석
		남상면 월평리 2285	답	1,918.3	24,938			정수팔
		남상면 월평리 2286	답	4,242.0	55,146			정은석
		남상면 월평리 2287	답	1,832.0	23,816			정문석
		남상면 월평리 2288	답	1,028.8	13,375			정수석
		남상면 월평리 2289	답	1,055.5	13,722			대현동 래정씨 오우공 파종중
		남상면 월평리 2290	답	1,942.9	25,258			이춘식
		남상면 월평리 2291	답	1,975.1	25,677			정영석
		남상면 월평리 2293	답	539.0	7,007			정문석
		남상면 월평리 2299	답	570.5	7,417			이형곤
		남상면 월평리 2300	답	1,685.1	21,907			정한석
		남상면 월평리 2301	답	730.7	11,472			정연술
		남상면 월평리 2302	답	54.8	713			정원석
		남상면 월평리 2303	답	1,067.1	13,873			대현동 래정씨 이목회 종중
		남상면 월평리 2304	답	784.8	10,203			정종석
		남상면 월평리 2305	답	917.1	11,923			정범석
		남상면 월평리 2306	답	2,038.2	26,497			정은석
		남상면 월평리 2307	답	796.8	10,359			정연욱
		남상면 월평리 2308	답	2,592.4	33,702			정은석
		남상면 월평리 2309	답	1,552.2	20,179			정범석
		남상면 월평리 2292	답	1,461.0	18,993			정문석
		남상면 월평리 2294	답	1,769.5	24,420			김동헌

지적도 및 위성사진

□ 토지소재지 : 남상면 월평리 2280 외 25필지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